

제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67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성은, 이형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강영철, 신은향

변론 종결 2023. 6. 20.

판결 선고 2023.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8. 4. 접수 제39277호, 같은 법원 등기과 2022. 8. 18. 접수 제641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은 북제주군 D(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1960.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C은 1951. 11. 15. 사망하였는데 C의 가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원고는 E의 아들이다.

DIAGRAM: C의 가계도(이미지 생략)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R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55. 10. 9.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1994. 8. 4. 접수 제392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등기와 2022. 8. 18. 접수 제641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C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G에게 상속되고 순차로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R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호주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제2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상속권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같은 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등기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바, 구 민법 제999조(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1960.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소급효가 있다)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상속개시일, 즉 C의 사망일인 1951. 11.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각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증인 W, X, Y의 각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등기 관련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R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구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등기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제2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희진

별지